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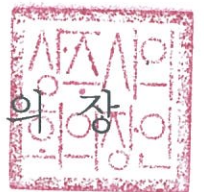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1-19호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 월 12 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지역 방범활동을 통한 상주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차량구입비 및 차량운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18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참조: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juntae0819@korea.kr

2) 주 소: (우37183)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3) 팩 스: 054-535-985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54-537-78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
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